

2023년도 운수회사 교통안전담당자 보수교육 안내

□ 관련법령

- (법 제54조의2제2항)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교육에 관한 법령
- (시행령 제44조의3)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사항에 관한 법령

□ 교육개요

- 교육대상 : '19년도 및 '21년도에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 후 신규 교육을 이수한 자 (약 1,911명)

- (기 한) 직무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

○ 교육일정

<온라인 보수교육 일정>

구분	접수일정	교육일자
1차	05.15(월) 09:00 ~ 05.24(수) 23:59	05.29(월) 09:00 ~ 06.11(일) 23:59
2차	07.03(월) 09:00 ~ 07.12(수) 23:59	07.17(월) 09:00 ~ 07.30(일) 23:59

<현장 보수교육 일정>

지역 (시행본부)	교육장소 (소재지)	수용 인원	접수일정	교육일자
전 북 (전북본부)	교통문화연수원 (전북 완주군)	100명	05.01(월) ~ 05.10(수) (09:00~23:59)	06.01(목) 09:00 ~ 18:00
경 기 (경기남부분부)	경기도교통연수원 (경기 수원시)	100명	09.11(월) ~ 09.15(금) (09:00~23:59)	09.22(금) 09:00 ~ 18:00
서 울 (서울본부)	교통회관 (서울 송파구)	100명	09.18(월) ~ 10.13(금) (09:00~23:59)	10.18(수) 09:00 ~ 18:00

* 교육 일정 및 장소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○ 교육과목 및 수수료

구 분	교육과목	교육수수료
보수교육 (8시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교통관련 법규 ■ 교통사고처리요령 ■ 교통안전관리실무 ■ 운송서비스 	70,000원

□ 교육신청방법

- 교육신청 : 희망하는 교육방식 및 일자로 개별신청 (온라인)
- 결제방법 :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(온라인결제만 가능)
- 필수서류 : 교통안전담당자 **지정확인서** (담당자 지정 여부 확인용)

*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신고 후 관할관청에서 회신한 승인 문서

1단계 로그인/회원가입	2단계 교육과정 신청 및 결제	3단계 교육대상 확인 및 승인	신청완료
교육사이트 TS-배움터 (edu.kotsa.or.kr)	신규교육 (대상) 신규 교통안전담당자 (서류) 담당자 지정확인서 (비용) 94,000원	교육대상 확인 (공단) 첨부서류(지정확인서) 등 대상자 여부 확인 ↓ ① 대상자일 경우 승인 => 교육일 2~3일 전 안내문자 발송 ② 서류 누락, 비대상자 => 별도 연락하여 서류 보완 또는 취소안내	교육수강 교육시간의 100% 수강 시 수료증 출력 가능
계정찾기 아이디, 비밀번호를 분실하셨을 경우, '아이디/비밀번호 찾기' 기능을 통해 검색 가능	보수교육 (대상) '19년도 또는 '21년도에 담당자로 지정된 자 (서류) 담당자 지정확인서 (비용) 70,000원		
	주의사항 * 서류는 '신청정보등록' 시 지정확인서 란에 첨부 * 현장교육 신청 시 지역 한번 더 확인 하기		

※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※ 온라인 교육과 현장교육 신청방식은 동일(TS-배움터 활용)

별첨1**교통안전담당자 보수교육 세부 안내**

□ 교육일정

구 분	5월	6월	7월	9월	10월	비 고
교육방법 (지 역)	온라인 (TS배움터)	현 장 (전 북)	온라인 (TS배움터)	현 장 (수 원)	현 장 (서 울)	5회
일 정	5.29~6.11	6.1	7.17~7.30	9.22	10.18	
교육인원	-	100명	-	100명	100명	

※ (온라인교육) 교육 기간 내 자율적으로 접속하여 교육 수강

(현장교육) 집합교육으로 정해진 일자·장소에 참석하여 교육 수강

□ 현장교육 세부장소

지 역	교육장소	소재지	수용인원	문의처
전 북	교통문화연수원	전북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131	100명	063-212-4740
경 기	경기도교통연수원	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191번길 6	100명	031-297-5000
서 울	교통회관	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19	100명	02-309-5000

※ 현장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지역별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.

NO	자주하는 질문	답변
1	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신고는 어디에 합니까?	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 제44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교통행정기관(인·면허 기관) 에 신고하시면 됩니다.
2	지정 신고 양식은 어디에 있나요?	「교통안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제17호 서식 활용하시면 됩니다.
3	교통안전담당자로 회사대표 지정/중복 지정/위탁 가능한지?	자격요건 충족 시 가능 합니다. 단, 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 제44조의2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합니다.
4	주사무소와 영업소가 있는데 주사무소에만 담당자 지정하면 되는지? (법인등록번호는 동일, 사업자등록번호 여러개인 경우)	주사무소에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 하시면 됩니다. 단,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대한 교통안전담당자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합니다.
5	'22년도에 보수교육 받았는데, 올해도 교육안내 공문을 받았으면 교육받아야 되는지?	보수교육은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2년마다 1회씩 받으면 됩니다.
6	교육수료여부 및 수료증 요청	한국교통안전배움터 접속 및 로그인 후 ' 마이페이지-나의 학습현황 '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* 단, '19년도 수료증의 경우 공단으로 문의
7	사이트에 접속했으나, 교육신청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.	교육신청버튼은 ' 교육접수기간 '에만 활성화됩니다. 교육 접수일정 확인 후 해당기간에 다시 접속 바랍니다.
8	교육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.	'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'→'교육대상여부 확인' 버튼을 통해 확인 가능 * 신규교육 대상자는 확인 불가 *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공단으로 문의